

2022 대선정책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하나

자유기업원

모하포럼

2021. 10. 18.



2022년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삶,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세대의 암울한 현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다시 회복되는 사회, 경제, 공정, 법치의 존재가 의심받지 않는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유기업원과 모하포럼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위한 총 46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9개 주요 정책에 대해 총 3차례의 연속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결과물은 정책 보고서 형태로 제작, 향후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nput type="checkbox"/>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46대 과제	04P
<input type="checkbox"/> 2022 대선정책 연속토론회	09P
<input type="checkbox"/> 9대 주요 과제 요약	13P
01.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인상 (옥동석 인천대 교수)	17P
02.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23P
03.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혁방향 (송경학 세무사)	25P
04.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보육 강화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29P
0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이영환 계명대 교수)	31P
06.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한 빅테크 육성(구태언 변호사)	37P
07. 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民富 증대 방안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45P
08.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조성봉 숭실대 교수)	49P
09.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53P
<input type="checkbox"/> 자문위원 명단	55P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46대 과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46대 과제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 분양제도 개편
- 임대차3법 전면 개정, 양도세 단순화
- 취득 후 1년간 양도세 한시 면제
- 상가 공시지가 합리화

2 (일자리)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국민을 응원하는 정부

- 친노조가 아닌 친노동으로 정책전환
- 직무급제 개편을 바탕으로 한 정년연장
- EITC 확대
- 상속재산 과세이연 제도 확대

3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행복 시대

-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 중소기업 체불임금 채권화, 정부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 혁신벤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4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복지

- 수혜자 중심의 복지제도 국민선택권 강화
- 모두가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공세권 확대
-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실업과 폐업에서 누구나 재기 할 수 있는 지원제도
- 개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국민연금 담보대출 시행

5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아닌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 재정준칙 강화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재정안정과 세대간 형평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 불필요한 공공부문 매각
-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한 빅테크 육성
-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형 국부펀드 신설

6 법치가 회복된 정상화된 사회 /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 권력으로부터 검찰독립
- 감사원 국회이관
-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7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부 / 제대로 일하는 정부

- 비대해진 청와대 규모 축소
- 시대에 뒤떨어진 공관 폐지
- 통일부-여가부 개편, 특임장관 신설 등 정부 조직 재정비
-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
- 비전문가 위주의 공공부문 낙하산 인사 근절
-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세금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8 국가가 책임지는 열린 교육의 기회

- 코딩, AI 등 미래를 준비하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
- 기숙형 명문 지방고, 특수목적고 활성화

9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 국민주치의제 도입
- 노후시설물에 대한 soc투자
-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 (자영업자 손실 보상/폐업지원)
- 공공부문 재택근무 확대

10 (외교/국방) 정상적인 외교, 바른 외교 / 국민을 지키는 외교

- 해양주권 수호(서해불법 조업 강력대처)
- 간첩죄 대상 확대 ('적국'에서 '외국'으로)
- 인권에 기초한 탈북민 보호
-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 납북자 송환
- 모병제 부분 도입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 -

<1 토론회>

- 주최: 자유기업원 · 모하포럼
- 장 소: 열림홀 (산림비전센터 7층)
- 일 시: 9월 28일 (화) 오후 2시
- 사 회: 강성진 교수
- 발 표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인상): 옥동석 인천대 교수
 -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혁방향): 송경학 고려대 겸임교수
- 종합토론

<2 토론회>

- 주최: 자유기업원 · 모하포럼
- 장 소: 열림홀 (산림비전센터 7층)
- 일 시: 10월 6일 (수) 오후 2시
- 사 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발 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보육강화):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 이영환 계명대 교수
(가상자산제도화를 통한 빅테크 육성): 구태언 변호사
- 종합토론



<3 토론회>

- 주최: 자유기업원 · 모하포럼
- 장 소: 열림홀 (산림비전센터 7층)
- 일 시: 10월 12일 (화) 오후 2시
- 사 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발 표
(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민부 증대 방안): 한정석 위원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조성봉 송실대 교수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일자리):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종합토론



9대 주요 과제 요약

9대 주요 과제 요약

1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상한소득 인상

-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자영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근로장려금 상한소득을 인상하고 이후 근로소득자에게로 확대 적용.

2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 대학입시의 핵심인 공정, 상식, 일관성이 조국사태로 무너지면서 정부와 대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만큼 선거법 위반사범처럼 대학입시비리 발생 시 대학지원자격자체를 3년이상 금지할 것.
- 또한, 문제인 정부의 잦은 대입변경과 논란만 키우는 입시제도다 문제인 만큼, ‘입시제도 6년 예고제’도입을 통해 예측가능한 입시제도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대학지원 핵심서류의 경우 클라우드기반으로 영구보존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3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혁방향

- 현행 부동산 공시법이 시행령으로 운용되고 있어, 정부의 세수확보 정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액제도가 오남용되고 있는 만큼 한도액을 법률로 규정.
- 또한 보유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관련 세수를 목적세로 전환해 무주택자-서민 주택 분양가 인하재원으로 사용.
- 마지막으로, 대학지원 핵심서류의 경우 클라우드기반으로 영구보존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4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보육 강화

- 초등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 확충, 아동돌봄시간 조정,
-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확대가 필요.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

- 지역간 과세체계가 다를 경우, 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자원이 이동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
- 따라서 조세는 자동차, 재산, 토지등 이동성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동성이 높은 것은 중앙정부가 모든 과세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6 가상자산제도화를 통한 빅테크 육성

-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평가가 부족함.
- 암호화폐가 지불형-유틸리티형-증권형등으로 각각의 특성이 다른 만큼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형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 국민연금 역할 증대를 통한 민부 증대 방안

- 현재 연금 수급대상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납입연금의 50% 이내 한도로 확대. 또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입법화해야 함.

8 가격규제+정부지원 방식으로 정부의 장악력이 확대하고 있음

- 행시 폐지 및 부처별-기능별 열린채용을 통한 공무원 제도를 개혁해야함.
- 공정거래 등에 있어 독립규제기관 설립, 과도한 지방공기업 정리, 특별회계-기금 및 목적세 등 칸막이 예산 정리 등이 필요함.

임금체계개편 논의를 노사 당사자 중심 협의모델에서 벗어나 청년 등 전국민 참여 협의모델로 구성해야함.

- 또한 호봉제를 운영하는 정규직 유노조 부문은 임금피크제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년연장 의무화를 미적용해야 할 것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인상

1. 정책목표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정책으로서 ‘음의 소득세’를 적극 부각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장려금’ 확대 정책 추진
 - ‘음의 소득세제’를 지향하는 근로장려세제는 동일한 재원 하에서 기본소득보다 취약층 보호에 훨씬 더 효과적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근로장려금을 확대
 - 기준중위소득 3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생계급여의 수준을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자영업자에 먼저 적용한 후 근로소득자로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부조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소득계층에 7가지의 급여를 제공.
 - 생계급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본인부담보상제도
 - 주거급여: 임차가구(전·월세)는 현금을, 자가가구에는 수리개량비 지원
 - 교육급여: 최저교육비를 기준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현금지급
 - 자활급여: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의 제공
 - 해산급여: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현금지급
 - 장제급여: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현금지급
- 근로장려세제는 ‘음의 소득세’를 지향하기에 좌파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우파의 정책 아젠다
 - ‘음의 소득세제’는 기본소득보장(Basic Income Guarantee)으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결과적으로 동일

- 2006년에 입법된 근로장려세제(EITC)는 2019년까지 대상가구 확대, 장려금액 인상 등 꾸준한 확대 개편이 이루어져 왔음.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제는 2중구조(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구조로 확대됨.
 - 2015년에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면 확대하여 모든 사업자들이 수혜가 가능함.

※ 현행의 근로장려금

구분	총소득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소득액등(Y) × 150/400
	400만 ~ 900만원	150만원
	900만 ~ 2,000만원	150 - (Y-900) × 150/1,100
홀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Y × 260/700
	700만 ~ 1,400만원	260만원
	1,400만 ~ 3,000만원	260 - (Y-1,400) × 260/1,6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Y × 300/800
	800만 ~ 1,700만원	300만원
	1,700만 ~ 3,600만원	300 - (Y-1,700) × 300/1,900

- 현행 근로장려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가지 급여와 무관하게 설계됨으로써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
 - ①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이중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기준은 OECD 기준치 50%에 미달하고 있음.
 -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수준에 불과하고, 근로장려금은 최저소득계층(기초생활급여 수급계층)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함.
 - ※ 2020년 기준 기준중위소득(1인가구)의 30% 수준은 연 6,325,898원, 50% 수준은 연 10,543,164원

②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이후의 가처분소득이 단절적으로 증가하여 근로유인의 왜곡이 발생함.

※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400~900만원 구간에서 단절적 증가

□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면서 기초생활보장수준을 기준중위소득의 50%로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함.

- 재원의 조달가능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 근로장려세제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함.

-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상한소득 인상을 3년간 시행한 후 동일한 인상을 근로소득자에게로 확대 적용

3. 실천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편하여 근로장려금 인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개정

□ 근로장려금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2조 615억원 예상

- 2019년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142만 가구, 1조 6,492억원

- 근로장려금 인상시 소요 재원은 약 266% 증가하여 4조 3,868억원 전망

※ 추가 소요재원은 2조 7,377억원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은 5년간 약 66조원 소요(연간 13.2조원)

※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3년간 25만원, 2년간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5년간 약 66조원이 소요

※ 100만 가구의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10억 아파트 평생이용권'을 제공하는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3억원이기에 300조원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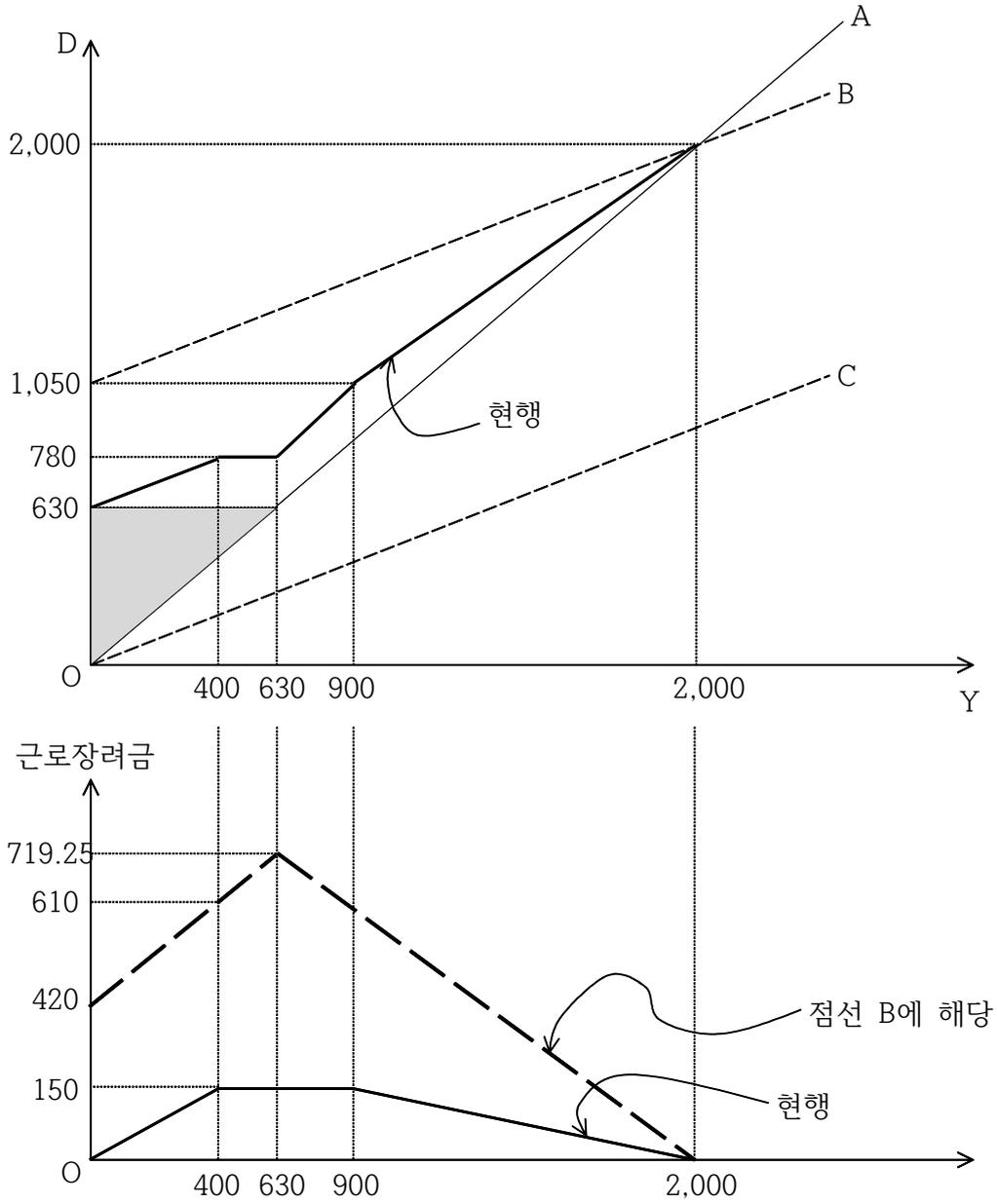
※ 전 국민에 대한 1,000만원 '기본금융'은 500조원에 대한 손실률 2%를 정부가 10년간 부담하기에 소요 재원은 연간 1조원.

<소요재원 계산자료>

- 1인가구의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 0.3)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1인가구): 2020년 기준 월 1,757,194원(연 21,086,328원)
 - ※ 2021년 기준 월 1,827,831원; 2022년 기준 월 1,944,812원
 - 기준중위소득 × 0.3 = 연 6,325,898원
 - ※ OECD 기준 50% 적용시 연 10,543,164원
 - 소득인정액: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합계에서 장애·질병 등 비용차감

- [그림 1]의 위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은 근로장려금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
 - 위쪽 그림은 시장소득(OY)과 가처분소득(OD)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OA는 45도의 직선으로 세금과 지원금이 없는 경우를 표시함.
 - 위쪽 그림에서 빗금 영역의 삼각형은 '생계급여'를 보여주는데, 0~630만원의 1인가구는 630만원의 소득이 기본적으로 보장됨.
 - 아래쪽 그림에서 '현행'은 소득수준별 점증, 평탄, 점감의 형태로 지급되는 현행의 '근로장려금'을 보여줌.
 -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합한 가처분소득은, 위쪽 그림에서 '현행'으로 표시되는 짙은 색의 꺾은 선으로 표시됨.

[그림 1]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그리고 음의 소득세



- [그림 1]에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인상 방법에 대한 설명
 - 위쪽 그림에서 점선의 직선 B와 같은 형태로 가처분소득이 주어질 때 음의 소득세가 구현됨.
 - ※ 직선 B는 연 1,050만원을 보장하되, 시장소득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근로장려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조세를 징수함.
 - ※ 직선 B는 점선 OC를 1,050만원 상방이동하여 얻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OA와 OC의 차액을 세금으로 부과한 후 1,0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함.
 - 직선 B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쪽 그림의 '점선 B에 해당'하는 형태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함.

- 근로장려금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의 전망
 - 아래쪽 그림에서 점선 B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은 현행의 근로장려금에 비해 면적으로 266% 증가함.
 - 근로장려금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별 가구 수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세청의 내부자료를 통해 파악가능함.
 - 만약 2,000만원까지의 '소득수준별 가구 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채택한다면, 근로장려금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은 현행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 비해 266% 증가할 것임.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기본소득 #자영업자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1. 정책목표

- 대선 최대 화두인 대학입시 안정적 변화와 현실적 입시제도 정책 안착 초점
 - 문재인 정부의 불필요한 잡음으로 논란만 키우는 입시제도, 수능변화 등 획기적 전환 유도 목표
- 2022 대선이 조국사태의 직접적 영향으로 제2, 제3의 조국 방지에 초점을 맞춰 공정한 대입정책 유지
 -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에 기반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유도

2. 현황 및 문제점

- 잦은 대입변경, 검증안된 입시혼란, 코로나 대비 못하는 대학의 현실 등을 통해 학교불신, 정부불신, 대학불신 확산 아직 진행중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뜬금없는 수능 절대평가 발표 그리고 취소, 조국사태로 갑자기 수능중심 정시 확대 발표, 대학입시와 고교학점제 따로 노는 대입정책으로 혼란만 가중
- 전례없는 조국 사태로 고려대, 부산대, 단국대 등 여러 대학의 대입 신뢰 하락, 이념 성향과 상관없는 내 자식 우선주의, 부모찬스 확산에 갈등 심화
 - 대입의 핵심은 공정, 상식, 일관성인데 이 모든 것이 조국사태로 무너지면서 정부와 대학 불신 초래
 -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에도 각종 편법, 위법, 탈법 난무하면서 조국가족으로 인한 수년간 법적 분쟁 지속
 - MZ세대를 넘는 미래세대가 기성세대의 “내자식 우선주의” 염증 확산

3. 실천계획

□ “조국 입시비리 방지법” 제정

-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해 선거법 위반사범처럼 대학 지원 자격 자체를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금지 입법화
- 대입신뢰 회복위해 대입부정 및 비리에 대해 엄격한 입학 취소 적용

□ 예측가능한 입시제도위해 입시제도 6년, 10년 예고제 추진

- 안정적 입시운영과 예측가능한 입시제도 정착 마련
- 최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입학단계부터 향후 대학입학 예측 가능 유도

□ 대입전담기구 독립적 운영 및 대학 학생선발 자율성 최대한 보장

- 국가차원의 대입전담기구 또는 위원회 체제 마련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
- 대입지원 핵심서류 클라우드기반 영구보존 전산시스템 구축
- 대학입시에서 대학 자율성 최대 보장통해 창의인재 선발체계 마련

#조국입시비리방지법 #6년또는10년_대입예고제

#대입전담기구 #대입자율성보장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혁방향

1. 정책목표

- 부동산 세제의 개혁 방향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의 실현, 단기적 자본차익 행위(투기)의 근절, 부동산관련 세금은 부동산공급재원으로만 사용
 - 부동산공시가액 직전년도 대비 캡 룰(cap rule) 제도로 조세납부의 예측가능성과 법률 안정성을 제공하여 정부의 교부세 확충을 위한 인위적인 세수 확보방지

※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손쉽게 운용되고 있으며, 주택 가격에 따라 공시가액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정부의 세수확보 정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액제도가 오남용이 되고 있는 상태, 직전공시가액 대비 한도액을 법률로 규정하여 예측가능한 세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교부세로서 전국지자체로 안분사용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보유세가 부동산가격에 오히려 전가되어 가격급등 및 전월세 상승 등 부동산가격 안정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행 종부세는 60세 이상 노령자 세액공제 20%(65세: 30%, 70세 이상: 40%), 보유세액 공제 5년이상 10년미만 20%(10년-15년미만 40%, 15년이상 50%) 총한도 80%를 한도로 세액공제함. 그러나 세액공제의 해당이 안되거나 세액공제대상자하더라도 현금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가계유지의 어려움 발생(예: 국민연금으로 보유세 납부)

□ 현행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주택자 71.5%(주민세포함), 3주택자 82.5%(주민세 포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인하여 처분즉시 자산차익보다는 자산일실 현상이 발생,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정상적인 세율(최고세율 49.5%)로 과세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에 충분한 세수확보를 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거래가 되도록 세율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보유세 제도는 안착시키는 것이 OECD 기준에 부합함

□ 우리나라의 주택세금의 문제점은 단기보유 비과세제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제도, 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 세대분리의 편의성 등으로 부동산 상승기에 세금부담 없이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자주 일어나게 됨. 일반주택과 고가주택의 경우 비과세 규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해외사례처럼 5년 보유와 거주기간을 비과세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실천계획

□ 부동산세금을 (부동산관련 보유세, 양도세, 상속증여세에서 발생하는 세수 연간 약20조원) 목적세로 분류하여 무주택자·서민 주택 분양가 인하재원으로 사용

□ 주택을 거주용과 투자용으로 구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여 처분, 증여, 상속시 정산하는 제도 도입

□ 다주택자에 대한 정상세율과세 및 장기적인 보유세제도 안착

□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보유세, 고가주택 기준을 주택공시가액 12억원으로 일괄 조정하고 거주와 보유 기준을 5년 장기적으로 설정하여 비과세 판단

□ 기업친화적 세제개혁을 통한 100년 기업의 성장확보

– 기업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한 기업영속성보장과 투명성제고

(캐나다, 호주 등 시행, 미국은 자본이득세 대신 133억 상속공제)

–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원천지국과세제도(Exemption method) 도입을 통한 해외수익 국내환류(투자) 촉진 및 글로벌 기업유치(미국, 일본, 영국도입)

□ 예측가능하고 담세능력 감안한 조세·재정정책

- 조세로 규정되지 않는 각종부담금, 수수료 성격 준조세를 조세로 입법적 전환

(사용에 대한 국회통제와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권리보장, 예: 의료보험료→ 의료보장세 등)

-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격차해소 및 자립강화로 지방분권확대

-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국가채무한도 제한제도 도입 (재정수입과 지출을 통제로 국가부채관리; 미국, 독일, 프랑스등 OECD 국가 대부분 도입)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보육 강화

1. 정책목표

- 아동 보육 지원을 통한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현금(아동수당, 양육수당) 및 현물 지원(보육서비스) 대상을 초등생에까지 확대하여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함.
- 맞벌이가구의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으로 아동돌봄시간 확보
 - 육아휴직제도 보편화, 대체인력 지원, 탄력적 근무제도 활성화

2.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현재 0.84로 OECD 국가 중 최저임.
 - 2019년 OECD 평균은 1.61임. 한 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한 중국은 1.70임. 이 밖에 일본 1.36, 영국 1.63, 미국 1.71, 프랑스 1.83임.
-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함.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 가구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함.
- 영유아 보육보다 더 심각한 초저 방과후 돌봄
 - 영유아는 모든 아동 무상보육으로 제도가 어느 정도 구비됨
 - 그러나 초등생의 경우는 돌봄의 공백이 발생함.
 -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등이 있으나, 일반아동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고(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수가 너무 적음(다함께돌봄센터, 493개소 2021년 6월현재)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무상보육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30-40대 기혼여성은 자녀양육이 어려움. 자녀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가 증가함.
- 공공, 대기업,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만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를 사용이 용이하지 않음.
 - 민간의 육아휴직 이용율은 0.6%(76,833명)임. 여성은 1.5%, 남성은 0.05%에 불과함.
- 육아휴직시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인력도 매우 부족함.
 - 공직의 대체인력 지원비율은 86.9%인 반면, 민간은 6.6%에 불과함.

3. 실천계획

□ 초등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 확충

-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일반아동도 접근이용 한 방과후 돌봄센터의 보편화를 위한 돌봄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확충하고, 낮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를 실시함

□ 아동돌봄시간의 조정

- 가구의 필요에 따라 아동돌봄시간의 탄력적 운영
- 연중 무휴의 보육실시 (시설 방학시 돌봄공백이 발생하므로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휴원이 없도록 함).

□ 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 제공

- 가정의 아동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후 활동 제공
- 실비로 양질의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

-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확대
- 다양한 근무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재택근무, 자율적 출퇴근제도, 시간선택제 근무 (15~35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등
- 부성휴가제도 권장

#보육 #일가정양립 #저출산 #초등돌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구조 재설계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고도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평가
 - 이에 잠재성장력의 조속한 확충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
 - 특히,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요구
 -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주체들의 경기규칙(the game of rule)을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
 - 특히, 일관성도 없고, 후진적이고, 누더기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제의 기본적인 틀을 선진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

- 아시다시피 조세는 권리였음. 따라서 경제행위의 대가로 납부하는 것이지, 정부가 징수하는 것이 아님
 - 경제행위는 반드시 누군가와 동업을 하는 것임
 - 동업자가 자신의 역할보다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 동업을 포기
 - 정부도 동업자임. 과도한 것을 요구하면 동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와 동업

- 우리 세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5가지로 정리
 - 첫째, (크든 작든 거의 매년 개편되어) 경기규칙 자체가 복잡
 - 둘째, 세목 자체가 지나치게 많고, 과세구간·세율이 복잡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함
 - 셋째, (각 세목마다) 비과세·감면 조항들이 너무 많아, 과세기반 자체가 협소
 - 넷째, (그간의) 세제개편은 대중요법적이어서 디지털경제에 순응하기 어려움
 - 다섯째, (정치권의 무분별한 요구에 의해 단행된) 세원배분의 문제 등으로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화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일정부분 한계 → 오늘의 주제

- 세제개편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 세제개편의 최적 시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라고 판단
 -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를 활성화이고,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정권 출범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세제도의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이유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세제개편은 시기를 놓치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
 - 그동안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세제개편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

- 중앙과 지방의 세원배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들이 있고, 대부분 유사한 결론을 도출
 - 대표적인 것이 Boadway, Roberts and Shah(1994)의 논문으로 세원배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4가지로 정리
 - ① (공통시장에서의) 효율성
 - ② (국가적 관점에서의) 형평성
 - ③ 행정비용
 - ④ 재정수요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 ① (공통시장에서의 효율성) 국가들의 연합체든, 국가든, 광역단체든 (하나의 형성된) 시장공동체 내에서 모든 자원(노동, 자본, 재화 및 용역)들이 어떤 제약이나 정책으로 의한 왜곡 없이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시장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
 - (중앙과 지방으로) 분권화된 과세체계는 2가지 측면에서 시장이 효율성을 저해
 - 첫째, 지역 간 과세체계가 다를 경우, 이동 가능한 자원이 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이동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특히, 자본과 교역 가능한 재화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
 - 둘째,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정부가 조세정책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면, 세부담을 완화하여 이동성 있는 자원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게 됨. 모든 지역이 동시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동성 있는 자원에 대한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세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② (국가적 관점에서의 형평성) 국가는 조세-이전체계(tax-transfer system)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그런데 지방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지역 간 과세체계의 차이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서 (노동과 자본 등) 세원이 이동한다면, 특정 지역의 정부는 과세체계의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을 유인하고 저소득층은 다른 지역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모든 지역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원의 지역 간 이동 유인은 서로 상쇄하여 사라지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재분배는 상당히 축소될 것임
 - 국가 전체적으로 재분배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분배를 억제하기 위해) 재분배 기능을 분권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존재

- ③ (행정비용) 어떤 세목이든 세금징수에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분권화된 조세행정은 징세비용이 많이 소요
 - 다양한 과세체계는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탈세의 위험이 더 큼
 - 특히, 세원의 이동성이 크거나 과세표준이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분권화된 과세체계에서 조세회피 및 탈세의 위험이 상당히 커짐
 - 2이상의 지역에 걸쳐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발생

- ④ (재정수요) 각급 정부가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면 각급 정부의 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의 자체수입이 있어야 함
 - 각급 정부가 수행하는 특정 기능과 관련된 세금은 해당 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타당
 -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누진적 과세, 경기안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세목은 국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지방도로와 관련된 세금이나 부담금은 해당 지방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
 - 이장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배분한 지방세만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조건들이 시사하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를 확충할 필요는 있음

2. 개선방안

- 이상의 원칙을 적용하되,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동성을 기준으로 이동성이 높은 것은 국세로, 이동성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한다는 전제하에 대체로 자동차나 재산, 토지 관련 세금은 지방(광역, 기초)정부에서, 법인세와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과세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 관세는 국제무역에 대한 과세이고, 법인세는 세원의 이동성이 커서 효율성 저해, 조세회피 및 탈세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하므로 여러 지역에 걸쳐 거래가 발생할 경우 행정이 과도하게 복잡하게 됨(세원공유 ×, 세입공유 ○)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발생지가 다를 수 있고, 지역 간 세율에 격차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국가에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 국경에서의 통제가 불가능한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탈세의 위험이 큼
 - 부가가치세수의 5%를 지방세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 징세행정을 모두 국세청에서 담당.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전체는 국세

- 소득세는 소득재분배의 수단으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경기안정화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세율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보다는 국세로서 적합한 성격
 - 그러나 Boadway, Roberts, and Shah(1994)는 지방의 역할에 비해 자주재원이 부족할 때 지방재원을 보충하는 재원으로 소득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
 - 3대 세수 규모(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세목 중에서 세율의 이동성 등에 따른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세목은 소득세로 사료
 - 일반적으로 개인은 법인에 비해 이동성이 낮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이 세율이 2지역에 걸쳐 있어 유발하는 세무행정의 어려움, 조세회피, 탈세 위험이 낮은 편

- 유의할 점은 이상의 세원배분은 과세에 의한 의사결정, 집행의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고, 세수입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
 - 지방소비세는 과세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에 대해 지방의 과세당국이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지만, 세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서 사용하도록 법률로 정해놓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로 분류

- ※ 참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과표.세율에 결정권한은 중앙정부)
 - 법인세, 소득세의 1/11을 지방정부에 배분, 부가가치세 5%를 지방정부에 배분

- ※ 참고 2. OECD 주요국의 지방세 비중
 - OECD 연방형 국가 : 29.85%
 - OECD 단일형 국가 : 11.83%
 - 한국 : 약 24%
 - (20% 이상인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등 5개국뿐임)

- ※ 참고 3. OECD 주요국의 지출 중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
 - OECD 연방형 국가 : 46.19%
 - OECD 단일형 국가 : 32.25%
 - (우리나라보다 지출비중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47.55%) 한 국가뿐임)
 - 한국 : 43.14%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세원배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출배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고 4. 지방정부의 지출 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하는 비중

- OECD 연방형 국가 : 64.2%
- OECD 단일형 국가 : 41.8%
- 한국 : 3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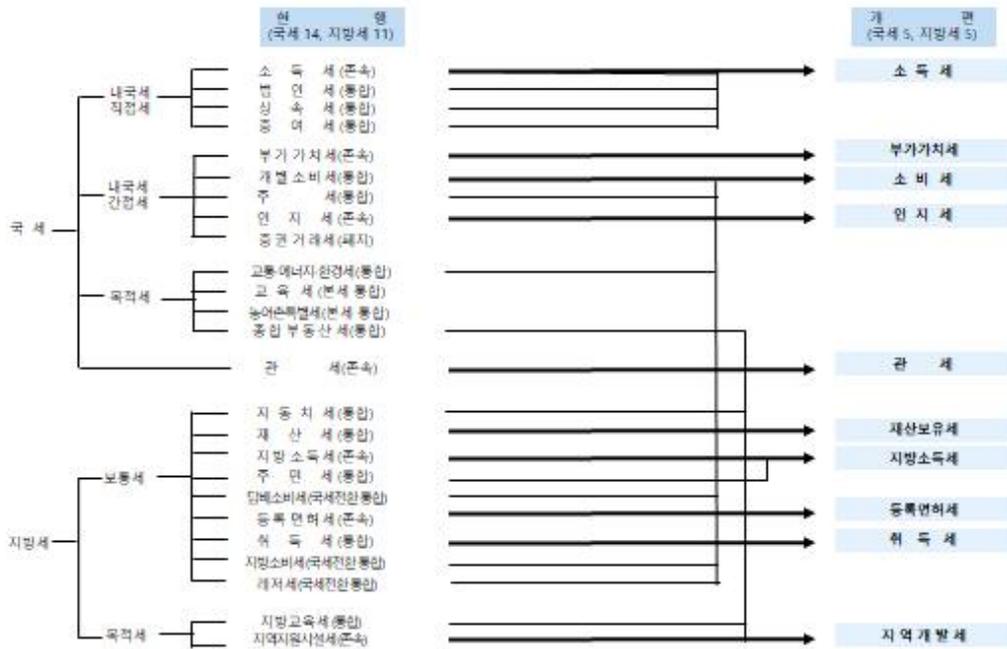
→ 이러한 특징은 국세, 지방세 세원조정에 대한 시사점 제공

→ 그러나 지출배분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세원조정만을 통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려면 조세정책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

→ Boadway, Roberts, and Shah(1994)의 4가지 세원배분 원칙 중 ④ 재정수요에 상응하는 세원배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다른 3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

즉, 이동성, 행정의 효율성 등 측면에서 지방세로 적합하지 않은 세목을 지방에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남

※참고 5. 과세체계 개편(안)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한 빅테크 육성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한 빅테크 육성

2021. 10. 6.
TEK&LAW@LIN
구태언 변호사

2021년 각국 암호화폐 규제 현황 일람표

나라	ICO 허용 여부	암호화폐 거래 허용 여부	암호화폐거래소 라이선스 유무	ICO 가이드라인 유무
싱가포르	O	O	O	O
스위스	O	O	O	O
중국	X	X	N/A	N/A
한국	X	O	X	X
미국	O	O	O	X
일본	O	O	O	X
영국	O	O	O	X
프랑스	O	O	X	O
몰타	O	O	X	X
루마니아	O	O	X	X

2

2021년 각국 암호화폐 규제 현황 일람표

나라	ICO 허용 여부	암호화폐 거래 허용 여부	암호화폐거래소 라이선스 유무	ICO 가이드라인 유무
우크라이나	○	○	X	X
캐나다	○	○	○	X
유럽연합	○	○	X	X
독일	○	○	○	○
호주	○	○	○	○
태국	○	○	○	○
브라질	○	○	X	X
러시아	○	○	X	○
베네수엘라	○	○	○	X
에스토니아	○	○	○	X

3

정부 규제 관련 현황



2017.9.4. 가상통화 대응방안(관계기관 합동)

- 가상통화는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상품'도 아니라는 입장
- 가상통화 취급업자 이용자 본인확인 등으로 거래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가상통화 투자 등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도록 입법할 것임을 밝힘 (**입법필요사항 / 입법 안됨**)
- 증권형태로 ICO를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힘

2017.9.29.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 '모든 ICO를 금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실상 ICO 금지 법안(**현재까지 입법 안됨**)을 입법추진하겠다는 것이었음
- 가상통화 투자 등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도록 입법할 것임을 재차 밝힘

2017.12.4.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재확인
-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4

정부 규제 관련 현황



2017.12.14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대처 지시

- (법무부)다단계, 유사수신 형태의 투자금 모집, 채굴을 빙자한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 이용 마약거래, 가상통화 이용 불법 자금 세탁, 가상통화 이용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 등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검찰에 지시

2017.12.28 가상통화 투기근절 위한 특별대책

- 가상계좌 대신 '실명확인 입출입계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현재 시행됨**)
- 가상화폐 시세조종, 환치기 등 불법행위 유무 집중 점검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힘
- 법무부 건의대로 특별법 제정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힘

2018.1.12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힘 (**입법필요사항 / 입법 안됨**)

2018.1.15 가상통화 정부입장

- 12일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의견조율 중이라고 밝힘
-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가치보장 주체가 없으므로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
- 향후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관련 부처 입장을 조율할 것임을 밝힘

5

정부 규제 입장 정리



정부 발표 이슈	일시	분류	경과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행위 처벌	2017.9.4	입법필요사항	입법 안됨
ICO 전면금지	2017.9.29	입법필요사항	입법 안됨
가상화폐 거래시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	2017.12.28	정부시행가능사항	시행됨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17.12.28	입법필요사항	입법 안됨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	2020. 소득세법 개정	개인소득세 :입법필요 상속증여, 법인세 즉시 부과가능	2022. 1.1. 소득세 부과

6

미국 SEC의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입장

- 유틸리티 토큰은 이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사용에 대한 기대를 수반해야
 - should carry an expectation of use, not an expectation of profits
- Howey test를 충족하면 증권(투자계약증권)
 - 가) 금전의 투자가 있고(a person invests their money)
 - 나) 그러한 금전이 공공의 사업에(in a common enterprise) 투자가 되며
 - 다) 그 목적이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것(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이고
 - 라) 투자된 금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오로지 사업자나 제3자의 노력에 의한 것(based on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

7

미국 SEC의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입장

-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사례
 - 1) SEC는 DAO token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7. 발표한 DAO case의 조사보고서에서, 분산원장이나 블록체인기술기반의 증권은 연방증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발행하는 사람은 증권의 제공 및 판매 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등록하지 않은 제공에 참여한 사람들도 증권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2) SEC는 리뷰 애플리케이션인 Munchee의 토큰 제공에 대하여, Howey test에 근거하여 Munchee의 토큰, 즉 MUN token 역시 투자계약이며, 따라서 증권법 제2(a)(1)조 상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3) SEC는 Centr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Centra ICO에서 제공한 투자(investments)가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SEC의 입장에 따르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수 많은 ICO들이 증권에 해당하여 SEC의 규제를 받게 되나, 전반적인 금지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음

8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의 구별에 대한 각국 입장



스위스 FINMA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암호화폐 분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 (FINMA)가 2018.2. 발표한 가이드라인

Categories	Functions/purposes	ICO 당시 증권 여부	
		토큰 있음	토큰 없고 계약지위이전가능
Payment tokens(지불형)	지불수단으로서만 기능	증권 아님 스위스 자금세탁법 적용	○ (자금세탁법은 적용안됨)
Utility tokens(기능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을 제공	증권아님(오직 유틸리티형) 증권(투자적 기능을 할 경우)	
Asset token(자산형)	- 실제 physical underlyings, 회사 또는 수익흐름에 참여 - 배당금 또는 이자수급권 -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	증권(증권법 및 민법 적용)	

9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의 구별에 대한 각국 입장



스위스 FINMA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암호화폐 분류

○ 유틸리티 토큰

- “특정 벤처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토큰
 - Confers usage rights in a product or service offered by a specific venture
-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청산, 거래 또는 지불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
 - Tokens that are used solely for clearing, exchange or payments for a specific project

○ 증권형 토큰

- 지분, 채권 또는 참여단위와 같은 전통적인 증권에 대한 것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토큰
 - conferring rights similar to those of conventional securities, such as shares, bonds, or participation units
- 소유자에게 미래의 현금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특정 벤처에 대한 소유권, 참여, 또는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토큰
 - entitling the holder to the future cash flow or “ownership rights, participation, or membership in a specific venture

10

21대 국회 발의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법안 일람표

암호화폐 관련 법안

이용우 민주당 의원	금융위 인가 의무·불공정 거래 수익 몰수
양경숙 민주당 의원	이용자 보호 의무·불공정 거래 규제
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사업 신고등록 및 산업 지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자본금 규제·암호화폐 예치금 부과

※이용우 의원은 기발의안, 나머지는 발의 예정임

- 특징
 - 증권형 토큰은 개념에서 배제
 - 비증권형 토큰을 규제하는 것
 - 거래소/보관관리/지갑사업자 규제
 - 일부 법안은 자본금요건도 도입
 - 암호화폐 거래 불공정거래 규제 (시세조종 등)

기존 법안/개정안의 문제점 - 암호화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음

1. 화폐	Bitcoin, Litecoin, Bitcoin Cash 등
2. 플랫폼	Ethereum, NEO 등
3. 핀테크	Bancor, Bancera, Crypterium 등
4. 지불	Ripple, Stellar Lumens, Request Network 등
5. 익명성	Monero, ZCash, Dash 등
6. 응용	Vechain, IOTA, Cardano 등
7. 가치교환	SteemIt, MaidSafe, iExec 등

- 블록체인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통일적인 규율이 아닌, 각 암호화폐의 속성에 따라 법률상 달리 취급해야 함
- 증권형이 아닐 경우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통화상품으로 취급해야 할 필연성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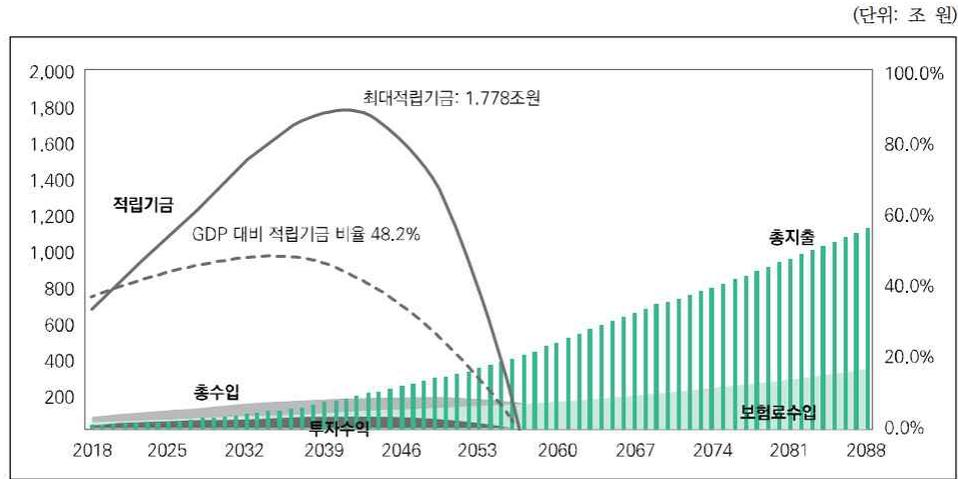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대한

기존 법률안이 증권형 토큰은 배제, 비증권형 규제에 과잉규제 도입에 대한

토큰의 분류	ICO	IEO	트레이드 마이닝 토큰	거래소
지불형	지불형/유틸리티형은 자본시장법 적용 안됨. 금융통화상품도 아님(정부 입장) 단, 비증권형이라도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자금을 공모하는 ICO는 일정한 규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전자금융거래법에 금융위원회가 인가할 경우 ICO를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2안) 전자금융거래법에 ICO를 정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IEO: 개발완료된 서비스의 토큰을 판매하는 것 개발자금을 미리 공모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상품 또는 이용권의 판매로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해당 없음	전자상거래법 적용
유틸리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안) 디지털토큰에 관한 특별법 제정 / ICO를 허용 4안)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는 방안 5안) 기 제출 법률안처럼 금융위 인가/등록제 			
증권형	자본시장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전자금융거래법에 금융위원회가 인가할 경우 ICO를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2안) 전자금융거래법에 ICO를 정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금융위원회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3안) 디지털토큰에 관한 특별법 제정 / ICO를 허용 4안)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는 방안 5안) 기 제출 법률안처럼 금융위 인가/등록제 	자본시장법 적용(금융위원회 발행 허가)	자금의 공모가 없으므로 증권발행 아님. 자본시장법 적용 안됨	자본시장법 적용

국민연금 역할 조정을 통한 民富 증대 방안

<그림 1>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규모



출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18.8.17)

■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5년마다 실시)

0 2018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규모는 약 660조원, 2041년까지 1,778조원까지 증가 예상.

0 2041년을 기점으로 수지적자가 발생, 205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 예상.
=> 향후 70년간 보험료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 전체.

0 제5차 재정추계시 연기금 고갈 시점은 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

=> 2013년 제3차 재정추계결과 고갈시점은 2060년, 제4차 재정추계결과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짐. => 출산율 저하+수급자 증가+양질의 일자리 감소

■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방법

(i) 보험료율 인상 (ii) 투자수익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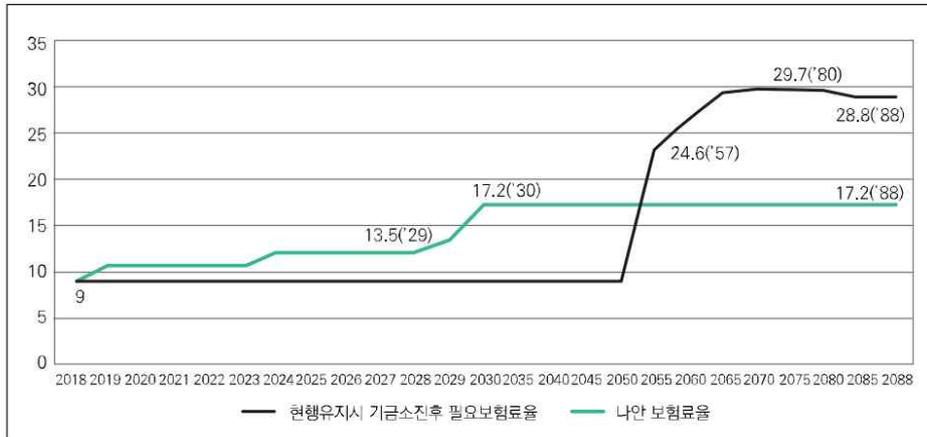
0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저항에 직면 확실. 자영업, 프리랜서 가입을 감소 예상

0 투자수익 증대 => 투자수익률이 0.1% 증가하면 기금소진 시점 1년 연장 (안정성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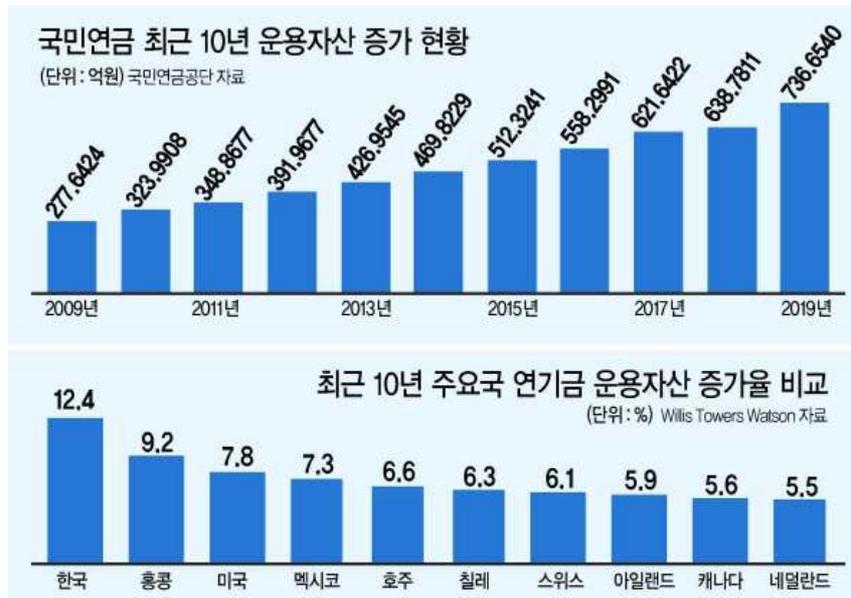
■ 국민합의적 해결 모형

납입연금 이용 서비스 확대 + 국가지급보장 + 투자수익 제고 + 점진적 효율인상

<그림 3>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스케줄



출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18.8.17)



(1) 납입연금 담보대출 서비스 확대

0 납입연금 담보 중간 대출 서비스 실시: 현재는 연금 수급대상자에 한해 실시 (실버론)

=> 납입 연금의 50% 내에서 국민연금 담보대출 허용 (IMF시기에 한시적 운용 사례)

=> 사학연금은 실시 중. 형평성 문제 해소

(2)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입법 실시

0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사회투자자본이 아닌 수탁자산.

0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회에 권고한 내용

0 국가 지급보장이 없는 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당

(3) 투자수익 제고

0 현재 국공채와 상장유가증권 중심의 투자를 대체 자산으로 확대

=> 국내외 부동산, 원자재, 회사채, 유동화증권, 파생 상품, 사모펀드 등

0 최종적으로는 국부펀드로 변신

(4) 연금 보험 효율의 점진적 인상

0 연금 서비스 개혁과 수익률 제고를 함수로 하여 인상 결정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1. 정책목표

- 관치경제를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제고
- 21세기의 변화하는 필요에 따라 작으면서도 강한 정부를 지향

2. 현황 및 문제점

-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경제 전부문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확대
 -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대화: 공공요금 가격규제를 통한 공공부문 조직 및 예산과 공기업 부채의 증가
 -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의 병행으로 공기업 부실 및 수익자 부담원칙 훼손
 - 언론·교육·문화·체육·예술 등 모든 부문에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정부/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
 - ‘가격규제+정부지원’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저하하고 정부의 장악력 확대 (예) 사립학교, 의료기관, 시민단체, 예술단체, 학회 등
 - 대정부 민원·로비를 위한 위성 조직 및 유사 공공부문의 확대 (예) 각종 협회, 사업자단체, 이익단체, 협동조합 등
- 민간영역 선점 및 왜곡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한
 - 인프라·에너지·물관리·교통 등의 부문에서 민간기업 부재 및 경쟁력 제약
 - 관치금융에 따른 금융산업의 자율성 제약과 고급정보의 정부독점 및 산업/기업정보 활용 한계로 IB,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정보산업의 미발달

- 공공부문 확대에 따른 경제의 생산성 저하
 - 산출보다 투입 및 절차를 중시하는 공공부문의 관료적 관리 특성으로 인한 자율성과 창의력 기회의 상실과 경쟁력의 저하
 - 공공기관 경영규제의 비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평가, 국정감사, 주무부처 감사, 청렴도 감사 등 각종 경영규제의 폐해
 - 소비자·채권자·투자자가 선택하고 감시하는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미작동에 따른 공공부문 경쟁력의 제약
 - 자율적 경쟁력보다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수동적 경제주체의 양산
 - 지원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피터팬 신드롬 현상의 만연
 - 창의적 취업활동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시험에 매달리는 공시족 확대

- 책임은 지지 않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입법 및 인사 관행의 만연
 - 각종 계획, 위원회 조직의 만연
 -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낙하산 인사의 선임

3. 실천계획

- 작은 정부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 작성

- 정부 개혁
 - 공무원제도 개혁: 한국에서 공무원은 직업보다 신분의 의미가 크므로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수시로, 부처별로, 기능별로 모집하는 열린 채용 채택
 - 정부조직의 축소 및 개편
 - 민간 및 공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가격규제·진입규제·경영규제 중심의 정부기능과 관련 조직의 축소
 - 감사원의 기능 조정
 -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공정거래, 금융규제 및 공익산업 규제 기능은 대통령으로부터 자율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기관으로 재편

□ 공공부문 개혁

-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부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 공공부문에 경쟁 도입: 부문별로 빅뱅형 산업구조 재편 또는 신규진입 모형을 선택
- 민영화 및 기능 재조정
 - 언론: MBC, KBS2, YTN, 연합뉴스, 방송광고공사
 - 에너지: 한전 및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력거래소
 - 인프라: 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
 - 금융공기업: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보, 신보
 - 기타: 우정사업, 마사회, 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방공기업 정리

□ 규제 개혁

-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의 확립: 모든 규제의 원칙적 철폐, 예외적 허용
- 의원입법을 포함한 전 부문 규제심사의 강화
- 가격규제, 진입규제의 재검토
 - 공공요금 규제방식의 전환: 독립규제기관

□ 예산제도 개혁

- 특별회계, 기금 및 목적세 등 칸막이 예산의 정리
- 불필요한 예산의 정리

□ 법체계 개혁

- 규제 개혁 및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법체계의 개편
 -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의 법체계 개편
 - (예) '~ 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삭제
- 각종 계획, 위원회 조항의 삭제 → 부처별로 필요시 자문위원회로 개편

#관치경제 #정부개혁 #규제개혁 #민영화 #예산제도개혁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독립규제기관 #공공개혁

빈곤과의 전쟁을 위한 일자리

1. 정책목표

□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유노조 중심의 친노조 정책은 강화되었으나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미취업자 일자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방치됨

- (1)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보호, 특히 (2) 노동시장에 미처 진입되지 못한 청년 미취업자 일자리 확보 중심의 친노동 정책으로 이중노동시장 구조 완화 필요

□ 향후 추진될 65세 정년연장 정책은 현행 호봉제 내지 연공임금체계가 직무급유내지 성과급 등을 전제로 시행될 필요

- 호봉제 사업장을 타깃으로 (1)직무급 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 방안, (2)직무급 내지 성과급 도입 효과에 준하는 임금피크제 방안 중 선택 시 정년연장 의무화

2. 현황 및 문제점

□ 노조 조직율은 '17년부터 10.3('16), 10.7('17), 11.8('18), 12.5('19)로 지속 증가, 민간('16, 8.5->'19, 10)보다 높은 공공부문('16, 62.2->'19, 70.5)도 증가

- 청년고용은 여전히 정체 내지 하향 중이고,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17, 32.9%->'19, 36.4),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지속 증가('99, 71.7->'19, 59.4)

-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유노조 부문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과 구조적 문제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고용 부문으로 정책 중심을 이동시킬 필요

□ 2016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60세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고 시행한 결과 청년층 고용감소 효과 실증(KDI한요셉('20))

- 민간부문의 경우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실증되고, 특히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고령층 고용 증가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 등 관련 규제에 의한 임금피크제 실시로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실증되었으나 40대 초반 고용감소가 관찰됨

□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정년연장 논의가 불가피하게 됨

- 향후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중소기업 무노조 부문 노동자와 비정규직 및 청년고용 문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음

3. 실천계획

□ 임금체계개편 논의를 노사 당사자 중심의 협의모델에서 청년 등 전국민 참여 협의모델로 구성 운용

-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보호와 MZ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이므로 전국민 수준의 임금체계개편국민대타협의회 구성 운영

□ 호봉제를 가진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유노조 부문과 호봉제가 없는 중소기업 무노조 부문의 정년연장 시행을 차등화

- 호봉제 보유 정규직 유노조 부문은 직무급 성과급 또는 그에 준하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되지 않고는 정년연장 의무화 미적용 (호봉제와 무관한 중소기업은 적용)

#이중노동시장구조 완화 #친노조가 아닌 친노동정책으로 전환

#임금체계 개편 #청년고용

자문위원

	이름	주요약력
	옥동석 인천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인천대학교 교수 - (현)한국재정정책학회 차기 회장 - (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부총리 사회정책자문위원장 - 성균관대/교육부 사교육혁신 교육연구소장 - 에듀팩토리 사외이사
	송경학 세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제2본부(대표세무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전문박사 - 2012년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전)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이영환 계명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 -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p>구태연 변호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법인 린(부문장)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박사과정 수료 -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
	<p>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KBS 기획제작 PD - (전)국회통일외교통상위 입법 보좌관 - (현)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p>조성봉 송실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전)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 이사
	<p>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 (전)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전)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공익위원
	<p>민경두 모하포럼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p>윤수현 (현)남북의료교육재단운영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평가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보건복지위원 - Cellpia 줄기세포재생클리닉 이사장

	<p>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기업원 원장 -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 미래한국 편집위원
	<p>강성진 고려대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F 주택금융전문가협회 전문위원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p>장재철 국민은행 본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 (전)SERI 경제연구본부 경제동향실 수석연구원 - (전)미국 워싱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센터 컨설턴트
	<p>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루스포럼 운영위원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사무국장 - (전)삼성증권 기업금융본부 Director
	<p>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 (현)컨슈머워치 사무총장 - (전)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
	<p>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 (전)공기업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전)국가환자위원회 위원